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전부개정) 2012-01-01 조례 제 4032호
(일부개정) 2013-04-01 조례 제 4234호
(일부개정) 2014-09-01 조례 제 4414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7-02-23 조례 제 4853호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 49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 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 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 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 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도 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

제7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 보장 및 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 보장과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①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요원)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 각 부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인권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민인권실천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인권실천단(이하 “인권실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실천단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실천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실천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인권지원센터)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요원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권문화 확산, 인권정책 추진 등 시민의 인권증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원체계 강화)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백서 발간)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광주인권현장 실천 확산) 시장은 광주인권현장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정책

제18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권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권도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5년 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도시의 역사성
2.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인권도시 육성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도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③ 육성계획은 제7조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문화도시종합계획
2.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4.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1>

1. 조례·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중인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20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21조(국제협력 강화) ① 시장은 세계적인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상시적 학습과 인권체험 및 인권의 제에 대한 연구,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와 연대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인권·평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2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인권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3.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4. 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명)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명)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부서의 인권정책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7.1>

⑧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참석 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의2(시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2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

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을 해제 할 수 없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3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옴부즈맨

제31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상임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두며, 그 외는 비상임옴부즈맨으로 한다.

③ 상임옴부즈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32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3조(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옴부즈맨은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제1항의 기관 및 시설은 옴부즈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옴부즈맨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 및 결과 조치) ① 조사업무는 상임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② 옴부즈맨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옴부즈맨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대상자는 보고·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출석·진술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옴부즈맨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신청인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즉시 옴부즈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평화협력관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광주인권도시추진기본계획’을 제7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권증진 기본계획(인권도시 육성계획)으로 본다.

부칙<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01 규칙 제 2918호

(일부개정) 2017-07-01 규칙 제 30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에 규정된 인권옴부즈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 및 광주인권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으로서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

제3조(신청방법)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옴부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고, 옴부즈맨은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조사기록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옴부즈맨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33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7.1>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옴부즈맨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맨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17.7.1.>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7.1.>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7.1.>

③ 옴부즈맨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건의 조사 등) ①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참여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④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맨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조사기록표지와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옴부즈맨 회의) 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옴부즈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임 옴부즈맨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의 개최는 상임 옴부즈맨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옴부즈맨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옴부즈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이 옴부즈맨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맨은 회의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7.1>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소위원회나 차별행위소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옴부즈맨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7.1>

⑥ 회의는 회의 운영, 옴부즈맨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옴부즈맨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옴부즈맨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 옴부즈맨의 조사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부칙<201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